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0호(호외) 2021. 10. 8.(금)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1-1776호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광양시 공고 제2021-1845호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광양시 공고 제2021-1861호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광양시 공고 제2021-1862호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회 람										
--------	--	--	--	--	--	--	--	--	--	--



광양시 공고 제2021 - 1776호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에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 연장 하고자 함.

### 2.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 3.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

### 4. 개정 조례안 : 별첨

### 5. 입법예고기간: 2021. 9. 23. ~ 2021. 10. 13.(20일간)

## 6. 의견제출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세정과(우 57785)
    - 전 화 : 061-797-3281
    - 팩 스 : 061-797-2580
    - 전자우편 : jinjjang4@korea.kr
-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 대비표 포함)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의 자동차세 감면기한 내용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b>		<b>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b>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		-----		
--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수질오염물질 측정지표 변경(COD관련 → TOC기준으로 변경)
  - 법령명 변경(「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기본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
- 체납처분 조문 수정
  - 체납 강제징수 규정인용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내용에서 「물환경보전법」의 내용으로 수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납부 고지 기준 변경
  - 30일 이내 → 60일 이내

### 3. 주요내용

#### ○ 관련 법령명 수정(개정조례안 전반)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변경

#### ○ (제18조 제1항) 시설설치비 납부 고지 기준 변경

- 시설설치비 납부고지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변경

#### ○ (제22조 제4항) 체납처분 조문 수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 ○ (제5장) 자구 수정

-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변경

#### ○ (별표) 자구 수정

- COD를 TOC로 변경하고 관련 기재 값을 변경된 값으로 대체 (별표 제1~제3호)
-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변경(별표 제5호)

### 4. 개정 조례안 : 별첨

###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08. ~ 2021. 10. 28.(20일간)

##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하수처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마로 60 하수처리과(우 57793)

- 전 화: 061-797-4935

- 팩 스: 061-797-4153(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kimamy@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30일이내에”를 “60일이내에”로 한다.

제5장 제목 “기본부과금의 부담”을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 조제목 “(기본부과금의 부담)”을 “(기본배출금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부과금은”을 “기본배출 부과금은”으로 한다.

제21조 조제목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을 “(기본배출금의 부과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을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부과금 징수 유예”를 “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3호 및 별표5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도 배출허용 기준(제11조 관련)**

광양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처리구역에서 처리장 오·폐수 관거로 배출하는 사업자(장)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물질	BOD	TOC	SS	T-N	T-P
기준(mg/L)	300	170	350	100	10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제13조 관련)**

업체부담금 = 운영비(BS) + 적립충당금

• 운영비(BS) =  $M_1 \times [ 0.3 \frac{BLi}{\sum BLi} + 0.7 \frac{f(Li)}{\sum f(Li)} ]$

BS : 월간 운영비 = 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M_1$  : 월간 업체 부담금중 적립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배출업소 오염 부하량  
(※ 오수 배출업소는 제외)

BLi : (BOD + TOC + SS + T-N + T-P) × 유량

f(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량

f(Li) :  $Q_1 \times ( \frac{BOD+TOC}{2} + SS + T-N + T-P )$

$Q_1$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오염 부하량

• 적립충당금

계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종업원수(명)	오염부하량(f(Li))
100%	20%	20%	15%	45%

[별표 3]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제13조 관련)**

오염부하량 = 배출량 x 배출농도

• 배출량

유량계 설치 형태	설치	미설치	기타 감면량 인정
배출량 산정	실측	상수사용량의 80%	(상수도사용량-감면량)의 80%

• 배출농도

- 폐수업체 : 실측치 적용

- 오·하수업체 : 기본계획에 의한 오·하수 계획 농도

항 목	BOD	TOC	SS	T-N	T-P
농도(mg/L)	197	62	181	41	5

- 분 료 : 오수업체 계산방식을 준용하되 배출농도는 실측치 적용

[별표 5]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방법(제21조 관련)

업체별 기본배출 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 × [0.7A + 0.3B]

$$A = \frac{\text{해당업소 오·폐수오염부하량}}{\text{업소 전체 오·폐수오염부하량}}$$

$$B = \frac{\text{폐수해당업소 오염부하량}}{\text{폐수배출업소 전체 오염부하량}}$$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p> <p>제11조(배출기준) ① 처리구역내 사업자(장)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p> <p>제1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납부 고지 하되 납부기한을 다음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토록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1~3 생략 ② 생략</p> <p>제 5 장 기본부과금의 부담</p>	<p>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 ----- ----- -----.</p> <p>제3조(처리구역) -----「물환경보전법」 ----- -----.</p> <p>제11조(배출기준) ①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② ----- -----「물환경보전법」 ----- ----- -----.</p> <p>제1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① ----- ----- 60일이내-- ----- ----- -----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 5 장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p>

현행	개정안
<p>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담)</p> <p>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p> <p>1~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본부과금은 시장이 원인분석 후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1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p> <p>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별표 5의 부과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p> <p>② 시장은 기본부과금 징수 유예 요청등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 적립충당금에서 선납할 수 있으며, 제20조제1항3호에 해당될 경우 협의회와 협의하여 적립충당금에서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p> <p>제22조(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p> <p>①~③ 생략</p> <p>④ 사업자(장)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p> <p>제28조(배수중지 처분)</p> <p>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 및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p> <p>1~3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담)</p> <p>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은 -----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 기본배출부과금은 ----- ----- -----.</p> <p>제21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p> <p>① 기본배출부과금의 ----- -----.</p> <p>② ----- 기본배출부과금 ----- ----- ----- ----- -----.</p> <p>제22조(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6의 규정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p> <p>제28조(배수중지 처분)</p> <p>① -----「물환경보전법」----- ----- -----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별도 배출허용 기준(제11조 관련)</b></p> <p>광양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처리구역에서 처리장 오·폐수 관거로 배출하는 사업자(장)의 별도 배출허용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수질오염물질</td> <td>BOD</td> <td>COD</td> <td>SS</td> <td>T-N</td> <td>T-P</td> </tr> <tr> <td>기준(mg/L)</td> <td>300</td> <td>300</td> <td>300</td> <td>100</td> <td>10</td> </tr> </table>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제13조 관련)</b></p> <p>업체부담금 = 운영비(BS) + 적립충당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BS) = <math>M_1 \times [0.3 \frac{BLi}{\sum BLi} + 0.7 \frac{f(Li)}{\sum f(Li)}]</m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S : 월간 운영비 = 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li> <li><math>M_1</math> : 월간 업체 부담금중 적립충당금을 제외한 금액</li> <li>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배출업소 오염 부하량 (※ 오수 배출업소는 제외)</li> <li>BLi : (BOD + COD + SS + T-N + T-P) × 유량</li> <li>f(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량</li> <li><math>f(Li) : Q \times (\frac{BOD + COD}{2} + SS + T-N + T-P)</math></li> <li><math>Q_1</math>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오염 부하량</li> </ul> </li> <li>• 적립충당금</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대지면적(m<sup>2</sup>)</th> <th>건축면적(m<sup>2</sup>)</th> <th>종업원수(명)</th> <th>오염부하량(f(Li))</th> </tr> <tr> <td>100%</td> <td>20%</td> <td>20%</td> <td>15%</td> <td>45%</td> </tr> </table>	수질오염물질	BOD	COD	SS	T-N	T-P	기준(mg/L)	300	300	300	100	10	계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종업원수(명)	오염부하량(f(Li))	100%	20%	20%	15%	45%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별도 배출허용 기준(제11조 관련)</b></p> <p>광양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공동처리구역에서 처리장 오·폐수 관거로 배출하는 사업자(장)의 별도 배출허용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수질오염물질</td> <td>BOD</td> <td>TOC</td> <td>SS</td> <td>T-N</td> <td>T-P</td> </tr> <tr> <td>기준(mg/L)</td> <td>300</td> <td>170</td> <td>350</td> <td>100</td> <td>10</td> </tr> </table>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제13조 관련)</b></p> <p>업체부담금 = 운영비(BS) + 적립충당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BS) = <math>M_1 \times [0.3 \frac{BLi}{\sum BLi} + 0.7 \frac{f(Li)}{\sum f(Li)}]</m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S : 월간 운영비 = 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li> <li><math>M_1</math> : 월간 업체 부담금중 적립충당금을 제외한 금액</li> <li>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배출업소 오염 부하량 (※ 오수 배출업소는 제외)</li> <li>BLi : (BOD + TOC + SS + T-N + T-P) × 유량</li> <li>f(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량</li> <li><math>f(Li) : Q \times (\frac{BOD + TOC}{2} + SS + T-N + T-P)</math></li> <li><math>Q_1</math>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오염 부하량</li> </ul> </li> <li>• 적립충당금</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대지면적(m<sup>2</sup>)</th> <th>건축면적(m<sup>2</sup>)</th> <th>종업원수(명)</th> <th>오염부하량(f(Li))</th> </tr> <tr> <td>100%</td> <td>20%</td> <td>20%</td> <td>15%</td> <td>45%</td> </tr> </table>	수질오염물질	BOD	TOC	SS	T-N	T-P	기준(mg/L)	300	170	350	100	10	계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종업원수(명)	오염부하량(f(Li))	100%	20%	20%	15%	45%
수질오염물질	BOD	COD	SS	T-N	T-P																																								
기준(mg/L)	300	300	300	100	10																																								
계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종업원수(명)	오염부하량(f(Li))																																									
100%	20%	20%	15%	45%																																									
수질오염물질	BOD	TOC	SS	T-N	T-P																																								
기준(mg/L)	300	170	350	100	10																																								
계	대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종업원수(명)	오염부하량(f(Li))																																									
100%	20%	20%	15%	45%																																									

현행	개정안																																								
<p><b>[별표 3]</b> <b>오염부하량 산정 방법(제13조 관련)</b></p> <p>오염부하량= 배출량 x 배출농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량</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유량계 설치 형태</th> <th>설치</th> <th>미설치</th> <th>기타 감면량 인정</th> </tr> <tr> <td>배출량 산정</td> <td>실측</td> <td>상수이용량의 80%</td> <td>(상수이용량-감면량)의 8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업체 : 실측치 적용</li> <li>- 오·하수업체 : 기본계획에 의한 오·하수 계획 농도</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항 목</th> <th>BOD</th> <th>COD</th> <th>SS</th> <th>T-N</th> <th>T-P</th> </tr> <tr> <td>농도(mg/L)</td> <td>197</td> <td>110</td> <td>181</td> <td>41</td> <td>5</td> </tr> </table> <p>- 분 료: 오수업체 계산방식을 준용하되 배출농도는 실측치 적용</p> <p><b>[별표 5]</b> <b>기본부과금 산정 방법(제21조 관련)</b></p> <p>업체별 기본 부과금 = 기본부과금 × [0.7A + 0.3B]</p> $A = \frac{\text{해당업소 오·폐수오염부하량}}{\text{업소 전체 오·폐수오염부하량}}$ $B = \frac{\text{폐수해당업소 오염부하량}}{\text{폐수배출업소 전체 오염부하량}}$	유량계 설치 형태	설치	미설치	기타 감면량 인정	배출량 산정	실측	상수이용량의 80%	(상수이용량-감면량)의 80%	항 목	BOD	COD	SS	T-N	T-P	농도(mg/L)	197	110	181	41	5	<p><b>[별표 3]</b> <b>오염부하량 산정 방법(제13조 관련)</b></p> <p>오염부하량= 배출량 x 배출농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량</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유량계 설치 형태</th> <th>설치</th> <th>미설치</th> <th>기타 감면량 인정</th> </tr> <tr> <td>배출량 산정</td> <td>실측</td> <td>상수이용량의 80%</td> <td>(상수이용량-감면량)의 8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업체 : 실측치 적용</li> <li>- 오·하수업체 : 기본계획에 의한 오·하수 계획 농도</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항 목</th> <th>BOD</th> <th>TOC</th> <th>SS</th> <th>T-N</th> <th>T-P</th> </tr> <tr> <td>농도(mg/L)</td> <td>197</td> <td>62</td> <td>181</td> <td>41</td> <td>5</td> </tr> </table> <p>- 분 료: 오수업체 계산방식을 준용하되 배출농도는 실측치 적용</p> <p><b>[별표 5]</b> <b>기본배출부과금 산정 방법(제21조 관련)</b></p> <p>업체별 <b>기본배출부과금</b> = <b>기본배출부과금</b> × [0.7A + 0.3B]</p> $A = \frac{\text{해당업소 오·폐수오염부하량}}{\text{업소 전체 오·폐수오염부하량}}$ $B = \frac{\text{폐수해당업소 오염부하량}}{\text{폐수배출업소 전체 오염부하량}}$	유량계 설치 형태	설치	미설치	기타 감면량 인정	배출량 산정	실측	상수이용량의 80%	(상수이용량-감면량)의 80%	항 목	BOD	TOC	SS	T-N	T-P	농도(mg/L)	197	62	181	41	5
유량계 설치 형태	설치	미설치	기타 감면량 인정																																						
배출량 산정	실측	상수이용량의 80%	(상수이용량-감면량)의 80%																																						
항 목	BOD	COD	SS	T-N	T-P																																				
농도(mg/L)	197	110	181	41	5																																				
유량계 설치 형태	설치	미설치	기타 감면량 인정																																						
배출량 산정	실측	상수이용량의 80%	(상수이용량-감면량)의 80%																																						
항 목	BOD	TOC	SS	T-N	T-P																																				
농도(mg/L)	197	62	181	41	5																																				

##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2조 제2호, 제3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 인용법령 변경사항 반영(제11조 제2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조제목을 반영하여 “무농약농수산물”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로 변경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농산물마케팅과) 에게(전화 061-797-3547 / 팩스 061-797-4176 / 전자우편 hway777@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 2】

##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2.“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11조제2호 중 “무농약농수산물”을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p> <p>3.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11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u>무농약농수산물</u> 등 인증을 받은 제품</p> <p>3.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p> <p>3.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u> -----</p> <p>3. ~ 6. (현행과 같음)</p>

광양시 공고 제2021-1862호

##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2021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사전적·확일적 결격조항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제13조 제1호)
  - 피한정후견인의 사전적·확일적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제도의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8.(20일간)

##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농산물마케팅과) 에게(전화 061-797-3547 / 팩스 061-797-4176 / 전자우편 hway777@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붙임 2】

##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을 “선고를”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정취소) 시장은 광양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받은 경우 2. ~ 9. (생략)	제13조(지정취소) ----- ----- -----. 1. ----- 선고를 ----- ----- 2. ~ 9. (현행과 같음)